

1.약관명: 대출거래약정서(주택도시기금대출 : 가계용)

2.시행일: 2025.03.24

3.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: 적용

주택도시기금대출 약관 일부개정 전후 대비표

| 개정 전 | | | | 개정 후 | | | | 비 고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조 거래조건 | | | | 제1조 거래조건 | | | | 비담목대출 금 리 적용방식 신 설 |
| 대출과목 | | 대출금액 | 금 원 | 대출과목 | | 대출금액 | 금 원 | |
| 대출개시일 | 20 년 월 일 | 대출만료일 | 20 년 월 일 | 대출개시일 | 20 년 월 일 | 대출만료일 | 20 년 월 일 | |
| 대출이자율 | 변 동 금 리 | 5년단위 | <신 설> | 변 동 금 리 | 5년단위 | 연 % 적용되며, 이후 국토교통부의 고시 기준금리가 변동 될 경우 대출 개시일로부터 매5년마다 변동됩니다. | | |
| | | 기타 | (생 략) | | | 기타 | (현행과 같음) | |
| |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| (생 략) | |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| (현행과 같음) | | | |
| | | (생 략) | | | (현행과 같음) | | | |
| | | (생 략) | | | (현행과 같음) | | | |
| 고 정 금 리 | 연 % <신 설> | 고 정 금 리 | 연 % * 대출기간 10년 및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선택 시 고정금리로 적용 | | | | | |
| <신 설> | | <신 설> | |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| 연 % * 10년 고정금리 적용 종료 후 국토교통부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변경 | | | |
| * 구입자금(공유형모기지 제외)의 경우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.5% 이하인 경우 연 1.5%를 적용하기로 합니다. (단, 주택보유 이력이 없는 신혼가구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.2% 이하인 경우 연 1.2% 적용) * 전세자금의 경우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.0% 이하인 경우 연 1.0%를 적용하기로 합니다. | | | | * _____ - | | | | |

※ 대출실행 후 3개월동안 이자 선납이 제한됩니다.

<신 설>

| | | |
|-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구 분 | 구입자금 | 전세자금 |
| 기준금리 적용기준 | (생 략) | (생 략) |

제10조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등

① ~ ⑦ (생 략)

<신 설>

※

※

※ 고정금리 선택 시 0.3%p,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선택 시 0.2%p, 5년주기 변동금리 선택 시 0.1%p 가산금리가 만기까지 적용됩니다.

※ 금리적용 방식에 따른 가산금리가 부과된 경우, 고정금리 적용 종료 후 변동금리 전환 시에도 가산금리 부과는 유지됩니다.

| | | |
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구 분 | 구입자금 | 전세자금 |
| 기준금리 적용기준 | (현행과 같음) | (현행과 같음) |

제10조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등

① ~ ⑦ (현행과 같음)

⑧ 위험건축물 이주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.

1. 본 대출 취급이후 퇴거주택에 대한 추가 전입이 있는 경우(단, 퇴거주택 소유자에 한함)
2. 퇴거 주택에 대한 정비사업이 완료된 경우(단, 퇴거주택 소유자에 한함)
3. 본 대출 취급 이후 다른 주택을 구입한 경우

금리적용 방식에 따른 가산금리 부과 및 변동금리 전환시 가산금리 부과 유지